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2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송재봉 · 김남근 · 민병덕
박정현 · 이연희 · 이주희
김남희 · 이용선 · 남인순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및 성매매 알선·제공 금지 등 엄격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성실하게 영업을 수행하는 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훼손하며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

써 업자를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36조(과태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한 자</u>
<u>2의2.</u> (생략) 3. (생략) ② (생략)	<u>2의3.</u>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